

2013년도 제2차 회의록

2013. 6. 11.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1. 회의명

- 2013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 회의소집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5. 15(수) 15:03~17:28
-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4. 출석위원 및 회의 참석자

□ 출석위원 : 14인

- | | |
|--------------|-------------|
| ○ 보건복지부 차관 | 이영찬 위원장 |
| ○ 고용노동부 | 代 권병희 (임서정) |
| ○ 보건복지부 | 양성일 위원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이지만 위원 |
| ○ 중소기업중앙회 | 이준호 위원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송원근 위원 |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권순원 위원 |
|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오건호 위원 |
|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이태식 위원 |
| ○ 농협중앙회 | 이순호 위원 |
| ○ 수협중앙회 | 김현용 위원 |
| ○ 한국공인회계사회 | 김금순 위원 |
| ○ 바른사회시민회의 | 연강흠 위원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종욱 위원 |
| ○ 국민연금연구원 | 김성숙 위원 |

□ 기타 참석자

○ 배석자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이형훈(간사)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운영목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이찬우

5. 회의진행순서

- 개 회
- 2013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보고 및 채택
- 심의안건 심의
- 보고안건 논의
- 폐 회

6. 상정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 13-5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심의 13-6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14년~'18년) 자산배분(안)
심의 1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보고 13-5	2013년도 1차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보고 13-6	2013년도 3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7. 토론요지

□ 심의 제13-6호 : 『국민연금기금운용 증기('14년~'18년) 자산배분(안)』

* 본 안건은 대외 비공개로 관리함

- 2014~2018년 중기자산배분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함
- 기금의 내외부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조건 설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구체적인 정책조건 변경 방안은 하반기 위험한도 개선방안과 함께 심의키로 함

□ 심의 제13-5호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 일부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의결된 사항을 단순히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고, 일부는 여기서 바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음.
(김현용 위원)
-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은 지난 2월에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심의 과정에서 기금 공개원칙에 대해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장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후보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 실무평가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원안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논의되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내부평가등급은 변동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증권사의 거래현황·거래관계는 공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추가 검토 후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함.(이형훈 간사)

○ ‘대체투자 자산군별 장기수익률 목표 벤치마크 등 정비’와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에 3개월물 포함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음. 정보공개는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 같고, 그것을 실무차원에서 푸는 것 같아서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이 ‘대체투자 자산군별 장기 수익률 목표 벤치마크 등 정비’인데 이에 대해 사전에 논의나 보고 된 것이 있는지, 이 논의가 규정개정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인지 궁금함. (김현용 위원)

- 대체투자의 자산군별 장기수익률 목표 벤치마크는 작년에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상전문위원회에서 대체투자의 세부자산에 대해서도 성과평가용 벤치마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함. 이에 기초해서 성과평가용 벤치마크와 자산배분용 벤치마크가 괴리 내지 차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이형훈 간사)

○ 대체투자의 목적을 개정하는데, 우선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 ‘고위험-고 수익의 특성이 강하므로 추가적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목적인 것 같음.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 됨.

그런데 개정안이 ‘분산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해서, 분산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투자를 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음.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는 다른 투자인데, 전통적인 투자 자산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의 분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대체투자라고 명명을 했던 것임.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대신 수익이 더 높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경우, 유동성이 떨어

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투자자나 기금의 경우는 적절한 투자여서 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분산투자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함.

‘정상적인 투자자산과 상이한 위험수익 및 기타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활용하는데 있다’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함.(연강흠 위원)

- 대체투자 장기수익률 목표 벤치마크를 성과평가 벤치마크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함. 이에 따라 수치들이 많이 변함. 주종의 관계에서 단순한 것 같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보통 논의할 때 1% 포인트 올리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이 있는데, 앞에 의결했던 성과평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그냥 단순히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함
지침개정은 조문정리 자체가 단순작업인 것 같으면 여기서 조문을 가지고 심의할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할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임. 지금 과정은 순서가 좀 아닌 것 같아 확인하는 것임.(김현용 위원)

- 성과평가 벤치마크는 본 위원회를 거쳤나?

벤치마크가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서 성과평가 할 때 그대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니까 여기 개선(안)과 같이 성과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를 바꿨고, 그 논의를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장기수익률 목표 벤치마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것이 제안의 요지인 것 같음.(연강흠 위원)

- 국내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벤치마크 수익률 계산할 때 통화표시가 원화인지. 환율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연강흠 위원)

- 환율효과 믹스된 원화표시임.(윤영목 실장)

- 김현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원래대로 하면 벤치마크 개정논의 후 후행작업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맞음. 그런데 이 안은 작년도에 벤치마크를 개정하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도 개선된 벤치마크가 바람직하므로 장기수익률 벤치마크도 따라가자는 의견에 따라 실무적으로 절차를 스피디하게 진행시켰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대체로 지침개정 이전에 원안을 보고 드리고 통과시킨 다음에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안은 사전에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양성일 위원)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심의함.(원종욱 부위원장)

□ 심의 제13-7호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전문위원회 자격요건이 금융관련 전문가로 정해지는데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그 성격이 금융관련자보다 조금 더 넓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함. 금융도 아셔야 겠지만 전체적인 거버넌스라든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놔야 될 것 같음. 4호에 전공을 포괄적으로 정책학 정도까지 열어놔야, 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함 그래서 안건으로 수정하면 법률,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분야 이쪽은 앞의 것이 거의 금융이기 때문에 정책분야 등 이런 식으로 여지를 넓히면 어떨까하는 생각임.(오건호 위원)
- 이번에 정부 개편하면서 경제부처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 위원회 구성에서 단순히 부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새로 부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부처로서, 식품부 차관하고 해양수산부 차관도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함.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로임.(김현용 위원)

- 6호에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음.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가 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좀 더 다른 시각의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6호를 통해서 (복지부장관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어떤가 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008년, 또 그 전에 해양수산부가 있을 때도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안 들어왔음. 다만, 차관은 안 들어오시지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수협이라든지 해양 분야를 관장하는,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음.

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가 (실무평가위원회는 아님니다만) 올해 5월 29일 위원회부터 적용되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1년 후에 공개된다는 것을 기관에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양성일 위원)

-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관련법에 있는 부처명칭도 같이 일괄개정함. 위원회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임.(이형훈 간사)

○ 기타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앞의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은 어떤지 '법률, 경제, 경영, 금융 및 관련학문' 이렇게 해서 '금융' 자가 '및' 뒤에서 '및' 앞으로 가면 관련분야단체 포괄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전의견 주신 위원님 의견도 반영되고 풀을 조금 넓히는 취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오건호 위원)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는 현재 경제학과의 교수 세 분, 법학과의 두 분, 연구위원 박사급이 두 분 있고 경영학과 교수, 변호사가 있음. 경제학 쪽에서는 주로 금융경제 쪽, 경영 쪽은 기업금융 쪽에 해당됨. 법학이나 변호사

들도 분야가 많이 전문화 됐기 때문에 기업금융 등 기업에 관련된 변호업무, 상법, 회사법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심.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 하고 있고, 6호에 '그 밖의' 조항이 있어서 2 배수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의 전문 연구분야를 고려하고, 추천기관의 순위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람.(이형훈 간사)

- 다음에 상위법을 개정 할 때, (부처협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 협의요청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김현용 위원)
- 기타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을 다 양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오건호 위원)
 - 그러면 법률, 경제, 경영, 금융 및 관련분야.(양성일 위원)
 - 그러면 관련 분야가 무엇인지 애매해짐.(원종욱 부위원장)
 -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해당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 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이 규정이 없는 것과 다름없이 운영 될 가능성이 있음. 가능하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음.(연강흠 위원)
 - 좀 더 특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법률, 경제, 경영, 금융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는 어떠신지.(오건호 위원)
- 의결권행사는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지분을 기업에 대해 의사결정에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임. 왜 금융관련자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의 역할이 한정되나, 금융관련 전문분야의 권한이 행사된 다음에 그만큼의 지분을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까지 금융관련자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의결권행사의 의미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지금 없으면 이런

조건도 괜찮은데 그런 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을 너무 좁혀버리면 지금의 위원회와 긴장이 생김.(오건호 위원)

- 만약 6호가 없다면 충분히 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 할 수 있으나, 6호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정부의 일반적인 위원회의 운영 관행임.(양성일 위원)

- '분야 등'의 '등'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는 것 아닌가?(이순호 위원)

- '등'도 있고 6호도 있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참여한 갈등관계를 잘 알고 있는 복지부로서 운영할 때 특정하게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 운영과정에서 필요시 수정할 수 있으며, 본 안건은 통상적인 범례를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양성일 위원)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정부추천 2명, 사용자대표 추천 2명, 근로자 대표 추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연구기관 1명으로 9명임.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2명까지 추천을 받고, 순위도 받음. (이형훈 간사)

○ 원안대로 심의함(원종욱 부위원장)

□ 보고 제13-6호 : 『2013년도 3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 6월에 대체투자허용범위 조정하는 것인지.(양성일 위원)

- 6월에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시 허용범위조정도 함께 검토될 계획임. 현재 대체투자비중이 TAA허용범위 하한 이탈하고 있어서, 상한 쪽의 허용 범위는 유지하더라도 하한 쪽에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대체투자 집행시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음(운영목 실장)

-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2차 실무평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종욱 부위원장)

8. 심의사항

의안번호	안 건 명	결과
심의 13-5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원안심의
심의 13-6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14년~'18년) 자산배분(안)	원안심의
심의 1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심의